

|           |                     |
|-----------|---------------------|
| 의안번호      | 제124호               |
| 의결<br>연월일 | 2011년 3월 일<br>(제 회)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
| 제출연월일 | 2011년 2월 25일 |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124 |
|----------|-----|

제출연월일 : 2011년 2월25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2011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및 바이오밸리, MRO사업, 구제역사후 관리 등 꼭 필요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① 정원의 총수 조정 : 2,892명 → 2,924명 (증32명) (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1,402 → 1,430명 (증28명)
- 소방본부 및 소방서 : 1,378 → 1,382명 (증 4명)
- ※ 교육공무원(42명), 의회사무기구(70명)는 변동 없음.

#### ② 직급·직종별 정원조정 (안 제4조 별표3)

|         |        |   |                      |
|---------|--------|---|----------------------|
| ○ 총 계   | 2,892명 | → | <u>2,924명</u> (증32명) |
| ▶ 일반직   | 1,045명 | → | <u>1,077명</u> (증32명) |
| - 4급    | 57명    | → | 58명 (증 1명)           |
| - 5급 이하 | 978명   | → | 1,009명 (증 31명)       |
| ▶ 기능직   | 244명   | → | <u>239명</u> (감 5명)   |
| ▶ 별정직   | 21명    | → | <u>20명</u> (감 1명)    |
| ▶ 연구직   | 137명   | → | <u>139명</u> (증 2명)   |
| - 연구관   | 21명    | → | 22명 (증 1명)           |
| - 연구사   | 116명   | → | 117명 (증 1명)          |
| ▶ 소방직   | 1,378명 | → | <u>1,382명</u> (증 4명) |
| - 소방령이하 | 1,368명 | → | 1,372명 (증 4명)        |

※ 지도직(24명), 교육공무원(42명)은 변경사항 없음.

③ 한시정원 표기 (부칙)

- 세종시 업무 관련 2명 (행정5급1, 행정6급1) → 2012. 9.30한
- 구제역사후관리팀 6명 → 2012.12.31한  
(행정5급1,축산6급1,토목6급1,환경6급1,행정7급1,수의7급1)

3. 의안전문 : 불입

4. 신·구조문대비표 : 불입

5. 관계법령 발췌 : 불입

6. 비용추계서 : 불입

## 충청북도조례 제 호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각 호 외의 부분 중 “2,892명”을 “2,92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402명”을 “1,43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378명”을, “1,382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한시정원) 본청의 정원 중 2명(행정5급1, 행정6급1)의 존속기한은 2012년 9월 30일까지로 하고, 6명(행정5급1,축산6급1,토목6급1,환경6급1, 행정7급1,수의7급1)의 존속기한은 2012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 기관별<br>직급별          | 총 계   | 본 청 | 의 회 | 직속<br>기관 | 사업소 | 출 장 소 |
|---------------------|-------|-----|-----|----------|-----|-------|
| 총 계                 | 2,924 | -   |     |          |     |       |
| 정 무 직 계             | 1     | 1   |     |          |     |       |
| 도지사                 | 1     | 1   |     |          |     |       |
| 일 반 직 계             | 1,077 | -   |     |          |     |       |
| 2~3급                | 1     |     | 1   |          |     |       |
| 3급                  | 8     | 7   |     | 1        |     |       |
| 3~4급                | 1     | 1   |     |          |     |       |
| 4급                  | 58    | 40  | 7   | 4        | 6   | 1     |
| 5급이하소계              | 1,009 | -   |     |          |     |       |
| 별 정 직 계             | 20    | -   |     |          |     |       |
| 1급 상당               | 1     | 1   |     |          |     |       |
| 5급상당이하소계            | 19    | -   |     |          |     |       |
| 연 구 직 계             | 139   | -   |     |          |     |       |
| 연 구 관               | 22    | 1   |     | 19       | 2   |       |
| 연 구 사               | 117   | -   |     |          |     |       |
| 지 도 직 계             | 24    | -   |     |          |     |       |
| 지 도 관               | 6     |     |     | 6        |     |       |
| 지 도 사               | 18    | -   |     |          |     |       |
| 소 방 직 계             | 1,382 | -   |     |          |     |       |
| 소 방 정               | 10    | 2   |     | 8        |     |       |
| 소방령이하               | 1,372 | -   |     |          |     |       |
| 교육공무원계              | 42    | -   |     |          |     |       |
| 총 장                 | 1     |     |     | 1        |     |       |
|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br>강사 | 30    |     |     | 30       |     |       |
| 조 교                 | 11    | -   |     |          |     |       |
| 기 능 직 계             | 239   | -   |     |          |     |       |

※ 복수별정은 별정에 포함

## 신·구조문 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p>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br/>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b>2,892명</b>으로 하며,<br/>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b>1,402명</b></p> <p>2.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br/>원의 정원 : <b>1,378명</b></p> <p>3. ~ 4. (생략)</p> | <p>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br/>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b>2,924명</b>으로 하며,<br/>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b>1,430명</b></p> <p>2.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br/>원의 정원 : <b>1,382명</b></p> <p>3. ~ 4. (현행과 같음)</p> |

##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 ⑤(생략)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등

### ○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2. 비용추계의 전제 : 32명 증원 부분에 대해 산출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원)

| 구분 \ 연도 | 2011년도        | 비 고 |
|---------|---------------|-----|
| 총 계     | 1,522,403,682 |     |
| 인 건 비   | 1,186,783,282 |     |
| 물 건 비   | 65,790,000    |     |
| 이전경비    | 297,778,700   |     |

4.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 ○ 재원조달 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 구분 \ 연도      | 2011년도        | 비 고 |
|--------------|---------------|-----|
| 합 계          | 1,522,403,682 |     |
|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 | 1,522,403,682 |     |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세출예산편성 (행안부 산정 총액인건비 내 운영)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없음
5. 작성자

|        |  |
|--------|--|
| 작성자 이름 | 충북도청 행정국 자치행정과<br>조직관리팀장 고찬식                   |
| 연 락 처  | 043) 220 - 2621<br>E-mail : biocenter@korea.kr |